

2020.3.20.~3.30. / 11일간

제31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안 동의안	원안가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요 내용

1.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3. 13.
- 제안자 : 김희식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2019.3.25.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개정)
 -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신설)
 -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신설)
 -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신설)
 -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신설)
 - 제8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신설)
 -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신설)
 -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신설)
 -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0. 3. 13.
- 발 의 자 : 임동섭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장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 정의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제3조 군수의 책무

-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등을 추진

○ 제5조 지원의 범위

-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등을 추진

○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 위원장, 부위원장 등 6명 이내 구성하고 임기는 2년

○ 제7조 협의회 기능 등

- 사업협회의 조정 및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3. 13.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4조)

- 재원 :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운용 수익금
- 조성 :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
- 용도
 -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해당 연도 최근 3년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재해의 발생,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기금이 필요한 경우
 -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
-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준용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3. 13.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인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호지원에서 제외’ 하도록 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여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단서 내용 신설 (안 제2조 제1항 제2호)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3. 13.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복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지방세 무료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제기하는 불복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 하고자함.

■ 주요내용

-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안 제9조)
 - 지원대상 기준 5억 여부 평가방법
-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안 제10조)
 -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방법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11조)
 - 선정대리인 의무 및 우대 방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 제출일자 : 2020. 3. 13.

■ 제안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

단체의 역할 등을 공동으로 규정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협의회 구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자 함.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현안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행정협의회로 전국 82개 군(郡) 중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음.

■ 주요내용

- 협의회 총칙(목적·명칭·구성·사무소의 위치 등)에 관한(안 제1조 ~ 제4조)
- 협의회 조직·임기·도별 소위원회·자문위원회에 관한(안 제5조 ~ 제8조)
- 협의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 협의회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3. 13.

■ 제안자 : 고재진 의원 외 7인

■ 제안이유

- 풍력발전시설이 소음이나 자연경관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상 발전시설(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풍력발전시설 입지 거리제한을 강화하도록 관련규정 신설(제20조의2 제2항 신설)
 - (현행) 가시권인 경우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주요도로 등은 500미터이며, 가시권이

아닌 경우는 200미터(다만, 10호미만 주거지역 100미터)

- (개정안) 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경우(②항 시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2. 주거밀집지역 : 사업부지로부터 2000미터 안

(10호 미만의 주거지역 : 사업부지로부터 1500미터 안)

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
사업부지로부터 2000미터 안

4.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 등 생산시설 : 1500미터 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